

글 읽는 순서

03 축하의 글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04 새빛소식

06 새빛과 법률 트렌드

최근 승소 사례 1 | 공정증서의 추인(추완) · 이석종 대표

최근 승소 사례 2 | 회생절차 개시 전 주채무와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의 성격 · 박진흠 변호사

최근 판례 사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원합의체)

최근 개정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4 새빛만평

하나 | 골드만삭스와 월가시위에 대한 소견 · 서철원 변호사

둘 | M&A Trend와 법무법인 새빛 투자금융자문부문 · 김경환 회계사

18 새빛인의 서재

고구려 – 김진명 저 〈새움〉

자연복지 – 김성이 저 〈양서원〉

20 새빛마당

시 | 내 어머니 · 소프트 포럼 김상철 회장

여행문 | 터키이야기 · 조정화 사원

다섯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 김진명 작가편 소감문 · 우진택 변호사

25 새빛광고

여섯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 12월 14일 신봉승 작가 초대강연

제1회 새빛백일장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CI 소개

“새빛”

기존 법률서비스 분야에 정의적 개념과 차원이 다른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저희의 소망을 “새빛”이라는 CI (Corporate Identity)로 담았습니다.

“새빛”이라는 문자 속에 시계와 나뭇가지·산과 물 등의 실사를 삽입하여 자연의 무한성과 유한성, 그리고 혁신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새빛인의 정신을 시각화하였으며, 캘리그라피 폰트를 사용하여 고객을 중심에 두는 새빛인의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였습니다.

“Beyond the Dream”

매일매일 새롭게 매순간 즐겁게, 더 큰 꿈을 꾸며 ‘금융중심의 아시아 No.1로됨’이라는 비전을 통해 오늘은 두발로 땅을 짚고 정진하는 새빛인의 밟고 맑은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Beyond the Dream

| 새빛이 보내는 러브레터 |

통권 02호 발행일 2011년 11월 1일 발행인 법무법인 새빛 발행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타워 18층 편집인 새빛 TEL 02 3448 0030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02-515-3681 www.sebitlaw.com

축하의 글

법무법인 새빛의 사무소 확장이전을 축하하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당사의 법률고문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당사의 이익 증대와 사업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법인 새빛’의 사무소 확장이전을 맞이하여 새빛의 러브레터를 통해 축하인사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빛’은 당사의 오랜 법률고문으로서 항상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며, 당사도 ‘새빛’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의 대부분을 승소하였음은 물론 ‘새빛’의 적절하고 명쾌한 자문을 통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매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새빛’의 전문가들은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열린 마음가짐으로 단순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빛’이 이번에 은행 및 투자금융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컨설팅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뛰어난 능력을 갖춘 여러 인재들을 영입하고, 역삼동으로 사무소를 확장·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새빛’은 기존의 짚고 의욕 넘치는 구성원들과 새로 오신 인재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고객들에게 국내 최고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를 비롯한 자문기업들의 발전에 더욱 큰 힘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새빛’이 장차 법조계 전체와 나아가 국가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무소 확장이전을 통해 힘찬 도약의 첫걸음을 내딛는 ‘새빛’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새빛소식



1. 다섯번째 실천하는 지식인포럼 개최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 김진명 작가

법무법인 새빛은 2011년 10월 12일 오전 7시 30분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 김진명 작가를 모시고 '우리나라 국호 韓의 비밀'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2. 제1회 새빛 백일장 개최

법무법인 새빛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사회에 대한 창의적 기여 방법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멘토링을 제공하여 남한 경제체제의 적응 및 꿈의 성취를 돋우고,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장래 범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진취적인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회 새빛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백일장의 주제는 '나의 꿈'이며, 응모기간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 까지입니다.

새빛 백일장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교육 및 선발과정을 거쳐 통일시대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새빛 구성원 소식

- 최진석 회계사 드녀, 박진흠 변호사 드남 | 최진석 회계사는 2011. 9. 30. 건강하고 예쁜 둘째 딸(최혜윤)을, 2011. 10. 17. 건강하고 썩씩한 첫째 아들(박담현)을 얻은 후, 박진흠 변호사는 3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새빛은 '출산은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아래 3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영입인사

법무법인 새빛은 2011. 11. 8.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업인수 · 합병 분야의 경력을 쌓아온 기업지문 전문 변호사 차상열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1998 부산 성도고등학교 졸업 -2003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5~ 2007 법무관 -2008~ 2011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5. '새빛'으로 2행사를 지어주세요

법무법인 새빛은 새빛의 열정과 노력을 '새빛'이라는 단어로 2행사를 공모합니다.

보내주실곳 : 총무팀 유명산 (msryu@sebitlaw.com)

01 새빛과 법률 트렌드_ 최근 승소사례



공정증서의 주인(추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43549 판결(심리불속행기각으로 승소)

회사 대표이사의 발행 ·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어음공정증서는 그 대표이사가 법원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판결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에 따라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의 공정증서가 되는데, 이후 새로이 적법하게 선임된 회사 대표이사가 해당 공정증서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한 공정증서가 되는가? 유효한 공정증서가 될 수 있다면 그 추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 쟁점

법무법인 새빛은 실제 소송에서 위와 같이 자격에 흠이 있는 대표이사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어음공정증서가 사후 적법하게 추인됨으로써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회복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는 바, 종래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하여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는 있되 그 추인은 공정증서상의 어음수취인이나 채권자가 아니라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뿐(대법원 2006다2803 판결, 90다20473 판결), 공증인법 또는 공증실무와 관련하여 추인의 의사표시에 관한 공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또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가 본인의 사후 추인을 통하여 유효한 공정증서로 인정된 사례나 촉탁한 대표이사의 자격(대표권)에 하자가 있었던 공정증서에 관한 선례가 없어 실제 유효한 추인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관하여 새로운 이론 및 공증실무 치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02 새빛과 법률 트렌드_ 최근 승소사례

회생절차 개시 전 주채무와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무의 성격

(수원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0가합17270 구상급)



박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새빛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새빛은 공정증서에 대한 주인이 소송행위라는 점에 기초하여 권한에 흠이 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주인은 소급효가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민법 제59조제2항,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이 추후 보완된 공정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공증인법 제31조제3항 및 앞서 본 대법원판결 등을 동원하여 자격에 흠이 있는 대표이사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도 이후 적법한 대표이사가 주인하는 경우 소급적으로 유효한 채무명의가 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주완공증을 해보지 않았다는 해당 공증인과는 촉탁대표권에 흠이 있었던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주인(주완)이 가능하다는 것과 주완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에 관한 의견을 공유, 실제 주완공정증서가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자격에 흠이 있던 대표이사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였던 공정증서가 소송 중 적법하게 주인(주완)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판단을 받아내어 승소하였습니다.❶

사실관계 갑은행은 2005. 11. 28. 을회사에게 약 500만 달러를 대출해 주었고, 당시 원고는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런데 을회사가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을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 병회사가 을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되 그 양수도 대금은 을회사의 회생채무 일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를 '인가 전 영업양도' 방식의 회생계획이라 하며,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이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았다. 즉 병회사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회생채권을 자신이 을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된 회생채권의 일부를 면제시키고, 면제되고 남은 회생채권은 3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연 1%로 변경하고, 병회사의 양수도 대금 지급채무(즉 회생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를 연대 보증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이 후 원고는 갑은행에 을회사의 대출채무를 대부분 변제해 주었고(주 : 회생회사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경우 회생계획과는 상관없이 그가 보증을 선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함) 그 결과 병회사가 갑은행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회생채무의 액수도 일부 축소되었다.

그러던 중 병회사 역시 파산하였고, 이에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병회사의 양수도 대금 지급채무, 즉 회생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을회사의 채무를 갑은행에게 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갑은행의 회생채권의 대부분이 소멸하였는데, 병회사는 위 회생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그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민법 제448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연대보증인간의 구상권에 기하여 피고는 소멸된 회생채권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①

피고의 주장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보증인이 보증하고 있는 주체무가 동일하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순수한 대출채무인 반면, 피고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의 일부가 면제되고, 분할상환의 방식으로 변제기가 변경되었으며, 이자율 또한 변경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가 보증하고 있는 주체무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보증한 주체무는 을회사의 갑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인 반면, 피고가 보증한 주체무는 '병회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을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영업양도 대가 중 현금부분의 각 분할지급 채무 가운데 불이행 된 채무'이고, 피고는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이지만,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고가 갑은행에게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한다 하더라도 을회사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을회사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이 소멸되고, 또한 갑은행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 일부가 면제되고, 변제기와 이자율이 모두 변경되었는 바, 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특수관계인의 장래 구상권이 소멸되고, 그 채무금액과 변제조건 등 권리가 변경된 회생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보증한 주체무와 피고가 보증한 주체무는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²⁾

판결이 갖는 의미 이 판결 이전까지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회생회사의 보증인과 회생회사로부터 회생채무를 인수한 자의 보증인 사이에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민법 제448조)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고,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회생회사의 '채무'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된 '회생채무'의 성격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가 없었으나, 동 판결을 통해 위 두 개의 채무는 동일한 성격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받은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❶

● 담당변호사 : 김민희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1) 민법 제448조에 따르면 동일한 주체무지에 대해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의 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주체무를 변제한 경우, 그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 나머지 보증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2인이 있는 경우 이므로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은 각각 주체무의 1/2에 해당함.

2) 피고는 이외에도, 기사 원고와 피고가 보증하고 있는 주체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①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내에서 병회사에 대한 장래의 회생채권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병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실권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회생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 반하며, ②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구상권자는 권리변경 전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자신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원고는 대출채무 중 이자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위 판결에서는 위 주장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03 새빛과 법률 트렌드_ 주요 판례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전원합의체)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 도 마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중간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끼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한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토지거래허기를 배제·침탈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대금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04 새빛과 법률 트렌드_ 최근 개정 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 10. 10. 일부개정, 2011. 10. 10. 시행)

따라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종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인 경우는 그 계약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기준의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서,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매도인 등에게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❶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미리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고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자율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66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철도차량에의 광고 허용

현재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철도차량에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철도차량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철도차량에도 광고가 허용됩니다.

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시·도 조례 위임 확대

현재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해서만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

계획적인 간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간판 수요가 많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하고, 간판표시계획서에는 간판의 규모와 표시 위치를 적도록 하였습니다.

새빛만평_01

골드만삭스와 월가시위에 대한 소견

라.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

지역 주민의 창의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개정 법률에는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는 바, 일정한 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임차권자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관리협정은 협정 체결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로 구성되는 주민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협의회 대표자와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주민협의회는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도입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이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❷

여러분은 골드만삭스의 이름을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자주 들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정말 어떤 기업이며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모건스탠리 딘 워터, 메릴린치와 함께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입니다. 이러한 투자은행은 1980년대 이후 주식시장이 커지자 직접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신용공여, 내부주문 집행 등이 자유롭게 되면서 직접 막대한 돈을 굽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생기업발굴, 투자증자, IPO, M&A 자문 등 IB업무 등을 통해서 종국에는 증권시장, 상품 선물시장, 부동산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철원 副호사

금융가에는 '골드만삭스가 움직이면 하늘과 땅으로 걷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의 금융을 통한 '세계의 지배력'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와인버그'가 골드만삭스를 워싱턴 정가와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 이래, 골드만삭스의 출신 인사는 관례적으로 미국의 재무장관, 백악관 비서실장, 경제보좌관, 국가경제지문위원회의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회장, 뉴욕증권거래서 회장 등을 줄줄이 역임하여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정책고문에 조차 골드만삭스 인사가 선임되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시정부에 이르러서는 백악관 행정부 김독기관을 접수하시기피 했다고 하며 현, 오바마 정부에서도 골드만삭스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하는군요! 30년 전만 해도 '월가'는 공동체의 몰락을 막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 사건 이후, 경제발전이 근로자와 대중의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위와 같이 자본권력이 대의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대중의 위임을 받은 정치권력을 누르고 국가사회의 '어젠더'를 결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위와 같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통해서 위험 성 높은 모기지[주택저당증권]를 모아 부채담보부증권 파생금융상품(합성CDO)을 만



들고 고객들에게는 불리한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하지 않은 채, 스스로는 이것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역배팅해서 무려 10억달러의 이익을 쟁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셈이지요 !

금융위기가 반드시 투자은행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은 리먼 파산 당시 7천억 달러 구제금융조치에 힘입어 되살아 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기업들은 이미 2010년 이래 사상 최대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작금의 경제 불황과는 동떨어진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기의 부담을 떠안게 된 일반 대중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의 월가시위도 바로 금융위기 자체에 대한, 그리고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분노와 좌절이 표출된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대중은 투자은행의 '수익은 민영화! 손실은 사회화!'란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면서 금융 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최근의 월스트리트 시위의 세계적인 확산 사태는 대중의 '정의와 공평함'에 대한 생각의 표출로 봄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이 금융 Convergence를 통해서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을 수행하고 대중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사이에 정의와 형평에 맞는 조화로운 조치를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

새빛만평_02

M&A Trend와 법무법인 새빛 투자금융자문부문

20세기 초 세계적인 M&A Advisory Firm인 Lazard에 의해 근대화된 기법이 마련된 M&A(Mergers and Acquisitions) Advisory은 그 이후 금융의 발달, 금융 관련 법률의 정비, 그리고 M&A를 바라보는 기업들 시선의 변화에 맞춰 현재와 같이 고도의 금융기법과 산업에 대한 Insight를 요구하는 정교한 작업으로 변화해왔습니다. 특히 M&A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과거의 시선과는 달리 기업 확장 및 역량 강화의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M&A를 선택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경환 회계사

M&A를 바라보는 시각만큼 M&A 기법과 M&A 주체 또한 다양하게 변화해왔습니다. 시장 및 산업의 상황, 산업 내 경쟁구도, 기술 발전의 속도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그 기법과 주체가 결정되어왔는데, 예를 들어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돈의 상대적인 가치가 매우 낮았던, 그래서 인수자금을 외부에서 부채형태로 조달하기 쉬웠던 90년대 말부터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인수자금 중 부채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50%~90%) LBO(Leveraged Buyout)*가 너무도 당연한 M&A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돈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고 많은 기업체, 투자자들이 투자 Risk를 극도로 회피하려 하는 최근에 와서는 과거와 같이 엄청난 부채를 동반한 M&A는 쉽게 찾을 수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저렴한 돈의 가치 덕분에 Fund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과거에는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FI)인 Private Equity Fund나 Hedge Fund가 전체 M&A 건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인 기업의 전략적인 방편으로서의 M&A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M&A가 빈번히 일어나는 요즘, M&A 주체의 변화는 또 한번 M&A 기법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Private Deal의 성장입니다. 과거 M&A는 주로 매각하고자 하는 회사가 대형 Investment Bank나 증권사를 통해 비밀리에 잠재 매수자들을 M&A Process에 초대한 이후 그들 간 매수액을 경쟁시킴으로써 인수액을 올리는 Bidding 방식의 Public Deal이 많았습니다. Deal Process 자체가 비밀리(?)에 진행되기에 Public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약간의 어폐가 있으나

* 피인수대상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 중 일부를 대출로서 조달하는 M&A 기법

그 실질을 보면, Deal Process를 진행하는 과정(통상 3~6개월)에서 시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매각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 공개매각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매각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매각회사의 핵심 자산인 인력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Deal이 진행되는 기간인 3~6개월 동안 핵심인력의 퇴사가 빈번히 일어나 Deal process 이후 핵심인력과 핵심기술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만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Deal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이 회사를 팔려고 한다는 인식은 직원들의 사기와 회사에 대한 Loyalty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장점보다는 단점에 따른 피해가 훨씬 더 커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온 M&A 방법이 바로 Private Deal입니다. 이는 매수 또는 매각회사가 정보의 누출을 Control할 수 있는 소형 M&A 전문 지문사를 고용해 상대 회사에 매수/매각 사실을 비밀리에 알리고 의향을 타진한 후 상호 간의 Interest가 맞는 경우 비밀리에 Deal을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매수/매각회사 내에서도 극소수의 인력만이 Deal 진행사실을 알고 대부분의 Deal process가 완료된 이후 M&A 사실을 공표합니다. 매수회사의 경우 Deal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각회사의 피폐화를 사전에 막아 온전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매각회사의 경우 굳이 Bidding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금액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혹 Deal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 사실에 따른 회사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와 같은 Private Deal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Google이 Motorola Mobility를 인수할 때 바로 이 Private Deal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양사에 의해 고용된 M&A Advisor는 Private Deal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Advisory firm으로서 Deal이 진행되는 동안 정보의 누출을 완벽하게 차단했으며, Deal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사 각각 내 단 5명 이내의 사람만이 Deal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M&A가 마무리됨에 따라 피인수회사인 Motorola Mobility는 M&A에 따른 회사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인수기업인 Google은 온전한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서 이 Deal은 매우 성공적인 Private Deal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법무법인 새빛의 투자금융지문부문은 Private Deal을 전문으로 하는 M&A Advisor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전략에 맞게 전문인력을 총원하고 관련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현재 크고 작은 수 개의 Private Deal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금융거래의 방식은 항상 변해왔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게 부문전략을 진화시키고, 선택한 전략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새빛의 투자금융지문부문은 멀지 않은 미래, 아시아 최고의 M&A Advisory firm이 될 Vision을 갖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❶

새빛인의 서재 – 10월 추천도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감동

〈고구려〉, 저자 김진명, 출판사 새움



추천사 | 요하문명의 주역, 만주벌판을 내달린 고구려를 읽지 않고 어찌 대륙의 기개를 한민족이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역사왜곡은 백제문화유산을 부정하는 일본뿐만 아닌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자기것으로 만들려는 중국에 의해서도 지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김진명 작가가 작품 속에서 한결같이 보여주는 역사인식을 보자면 지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안타까움으로 심장이 아파옴을 감출 수 없다. 독서의 다양성은 자신의 뿌리를 확고히 인식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며 17년간에 걸친 자료의 검토와 해석 끝에 내놓았다는 이 책…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읽고 토론해야 하지 않을까.

“무란 본시 몸을 움직이는 기술이지만 그것도 높이 올리기엔 정신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자객의 생명은 그 은밀함에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자객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온 무사들에게 소문을 낸 후에 자객을 보낸다면 먼저 죽음을 주고 다음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❷

새빛인의 서재 – 11월 추천도서

고통의 인식에서 새빛의 희망으로

자연복지, 저자 김성이, 출판사 양서원



추천사 | 새빛은 유능한 직업인으로의 정진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지는 시민이 되기 위하여 4년 전부터 소외지역 학교의 꿈 많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불우한 재난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이웃과 동시대인의 뜻있는 응원이 필요한 역사가 및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기부자산인 일월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빛은 창의적 관점에서의 사회기여활동으로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틸북자 2세들이 실질적으로 넘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생의 동반자 개념을 부여한 ‘새빛백일장’을 2011년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 정당성을 아름답게 풀어준 책, ‘자연복지’를 11월 도서로 추천한다. 저자는 현장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며, 고통이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흥분이 이웃에 봉사하는 열정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즉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행위가 바로 ‘복지’인데, 인간은 누구나 자연적 복지기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새빛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연적 복지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도덕성을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러한 초심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조직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차별로 인한 불이익의 폭은 불안, 경시, 물질적 손실, 보다 나은 삶의 기회 박탈, 정치적 박해, 폭언과 폭행, 대량학살까지 매우 넓다.”, “문화적응은 주류와 비주류 문화가 쌍방 존중되는 교류가 필요하며 주류문화원주민들이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인정하고 이들의 고유한 문화마저도 보존하도록 용인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새빛마당

내 어머니

이른 아침, 새벽이 터오면
당신은 항상 그렇듯이
아들이 만든 작은 정원을
마냥 바라보고 앉아 계신 어머니



당신이 살아온 84년 세월 속의
언어들을 하나씩 꽃잎에 물들이고
그런 꽃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은
당신에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디 예쁜 우리 엄마 모습
아직은 정원에 꽃처럼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나는 아직도 당신의 치마 자락을
움켜잡는 어린 아이가 되고 싶어요

내 어머니

세월의 끝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을 위해
나는 아름다운 꽃을 심어 드리고 싶어요

2002. 5. 17 비오는 날 아침
막내 아들 상철이가



소프트포럼 김상철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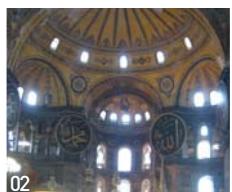
01

새빛마당 | 터키 10야기

● 조정화 시원

이번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친구들과의 일정, 항공권의 여부 등 학생 때처럼 훌쩍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고민 끝에 터키를 목적지로 정하였고, 자유여행으로 약 3개월의 여행준비를 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믿기에 도서관에 가서 터키에 관한 역사책, 여행서적 등을 여러 권 읽어보며 터키에 대해 알아갔다. 수학여행 전날 밤 잠을 자지 못했던 것처럼 준비하는 3개월 내내 설레임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냈던 것 같다.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가는 날이 오기는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 금요일 밤 11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약 11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터키의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 도착하였다. 9박 10일간의 터키여행에서 좋았던 장소들과 먹거리들을 소개해 보겠다.

여행경로 (in)이스탄불→ 카파도키아→ 파묵길래→ 셀죽→ 이스탄불(out)



02

[이스탄불] 여행 첫날과 마지막 2일을 이스탄불에서 보냈다. 아시아와 유럽에 걸치는 도시답게 볼 것도 할 것도 많은 곳이다. 모스크, 대성당, 박물관, 해협 등 오랜 역사에 걸맞게 도시 전체가 유적지 같다.

아야소피아 | 세계에서 가장 큰 비잔틴 양식의 성당으로써, 이스탄불의 상징. 비잔틴 제국 때는 그리스 정교의 대성당이었다가 1453년 오스만튀르크 제국에게 정복된 뒤부터는 이슬람의 사원으로 쓰이다가 1934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쓰인다. 보자마자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묘하다.

01_아야소피아 성당

02_아야소피아 성당 내부



01

02



03



04



05

돌마바흐체 궁전 | 원래는 술탄 하흐메트 1세가 휴식처로 쓰던 건물이 있었는데,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제31대 술탄 암둘 마지드가 1853년에 대리석으로 새로 궁전을 지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 지은 유럽풍 건축물이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선사받은 750개의 전구로 장식된 상들리에가 황제의 방 천장에 매달려 있다. 화려함의 극치로 내부 사진은 금지되고, 투어 역시 조를 나누고 신발에 비닐을 덮어야 들어갈 수 있는 엄격한 곳이다. 이동 (야간 버스로 약 11시간)

[카파도키아] 약 3백만 년 전 화산폭발과 대규모 지진활동으로 젯빛 응회암이 뒤덮고 있으며, 그 후 오랜 풍화작용을 거쳐 특이한 암석군으로 이어진 곳, 수천 개의 기암에 굴을 뚫어 만든 카파도키아 동굴수도원이 남아 있다.



06

벌룬투어 | 터키여행에서 제일 기대했던 열기구 체험이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기구 타는 곳으로 출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랐다. 열기구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고 한다. 운이 좋게도, 내가 탄 열기구의 파일럿분은 얼마나 능숙한지 바위 사이에도 가보고 땅 까끼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며 즐겁게 해주셨다. 위에서 바라본 전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서 감탄사만 연발되었다. 약 1시간의 비행 후, 수료증이 수여되고 작은 와인파티를 열어주었다.



01, 02_셀죽 애페스

03_파목길레

04_유적온천

이동 (야간 버스로 약 11시간)

[파목칼레] 터키어로 '목화의 성' 이라는 의미로 경사면을 흐르는 온천수가 빚어낸 장관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석회성분을 다량 함유한 이곳의 온천수가 수 세기 동안 바위 위를 흐르면서 표면을 탄산칼슘 결정체로 뒤덮어, 마치 하얀 목화로 만든 성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유적온천(클레오파트라 엔틱풀) | 로마황제들이 파목칼레에서 온천을 즐겼는데, 클레오파트라 역시 방문했다고 한다. 유적지 위에 온천수가 나와서 유적들 위를 걸어 다니는 재미가 쏠쏠했다. (이끼가 너무 많아서 미끄러웠지만). 하지만 강렬한 햇빛에 온몸과 머리 두피까지 타버렸다는 슬픈 사실. 이때 탄 나의 피부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동(버스로 약 3시간)

[셀죽 애페스] 로마의 4대도시에 해당된다는 고대 로마 유적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상상하며 걷는 일, 2만 4천명이라는 대인원을 수용했던 원형대극장을 살펴보며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놀라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영화에서 보던 로마 목욕탕과 화장실, 도서관 신전, 그 시대 고도로 발달한 도시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 것만으로 감탄하게 된다.

이동, 다시 이스탄불로 (비행기로 약 1시간)

[먹거리] 여행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터키 음식 하면 바로 떠오르는



01

02

03

고등어케밥(사진1) 빵에 고등어를 끼워 먹는다는 것이 잘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먹어보니 그냥 밥에 먹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었다. 고등어 특유의 비릿함을 없애기 위해 레몬소스와 양파는 필수다.

피데(사진2) 터키식 피자. 얇고 담백한 빵이 일품이고 간고기와 치즈 등이 올려져 바로 화덕에 굽기 때문에 따뜻하고 정말 맛있다.

로콤(터키식 딜라이트)(사진3) 터키 과자의 한 종류로서 치와 같이 즐긴다. 영화 <나니야연대기>에서 하얀마녀가 형제들을 배신하도록 샷째를 꼬실 때 휘둘렸던 마법의 과자. 우리나라의 떡과 비슷한데 내 입맛에는 너무 달아서 1개 이상을 먹기는 힘들었다.

치킨케밥 한국에서도 많이 맛 본 매콤한 소스의 익숙한 맛.

케밥 이외에도 맛있는 먹거리가 다양하다. 특히, 터키의 빵은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있다. 사실 1주일 이상 모든 주식을 빵으로 해결하다 보니 나중에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어찌나 먹고싶던지, 아무리 빵을 좋아하는 나지만 주식으로는 역시 밥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번 여행은 터키와 그리스 산토리니로 예정하였다. 하지만 워낙 터키가 넓고 시간은 많지 않아 그리스를 포기하였다. 터키는 복을 받은 나라 같다. 긴 역사와 많은 유적들, 고대유적지나 박물관에 갈 때마다 내 심장은 뛰었고, 머리 속에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다. 그리고 터키인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은 민족, 다르게 말하면 남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한다. 지도를 보면 두리번거리면,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나서 "도움이 필요하냐", "음식점은 저기다",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 등 정말 친절하기도 하면서 말을 많이 건다. 사람들이 정이 많아 어디서든지 친구이며 이야기를 쉽게 나눌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살포시 옆에 다가와 한국전쟁 당시 참전하셨다며 악수를 하시자던 할아버지. "어데가노~?" "저 대구(대구)에서 케밥집 운영합니데이" 라고 말하던 터키 청년. "대~한~민~국! 한국은 우리의 형제국가지" 하고 외치던 사람들.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주니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이렇듯, 나의 이번 터키 여행은 다녀온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다. 그야말로 터키에 훌쩍 되었다.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여 기분이 좋아지는 터키 여행, 우리 '새빛' 가족들도 꼭 가보길 추천한다. ●

다섯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 김진명 작가편 소감문

김진명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

강연 주제 : 우리나라 국호 韓의 비밀



우진택 변호사

초등학교 6학년 무렵 큰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 중학생인 사촌 형이 읽던 책들을 많이 따라 읽곤 했는데, 그 날따라 내 눈엔 놀이책(?)이 들어왔다.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 제목이 뭐 이래?’라고 생각하면서도 호기심에 제1권부터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3권까지 모두 읽어버렸다.

그날로부터 약 18년이 지나 이번 포럼에서 작가님을 직접 뵙는다는 생각에 문득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책 속에 푹 빠지게 만드는 놀라운 필력을 지닌 작가님은 도대체 어떤 인상을 가졌으며 어떤 화술을 구사하는지, 또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지 궁금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작가님에 비해 이번 포럼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포럼에 임박해서야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인데 과연 여기서 韓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불행히도 명확히 떠오르는 무언가가 없었다. 생각해보니 이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이에 관한 역사책을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았다. 우리나라 국호 韩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증한 역사학자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나 역사학계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나 스스로도 그동안 이에 관한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작가님의 소설은 민족주의적 소설일 뿐이라는 일부 세간의 평가는 비판받아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식민사학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류 역사학계의 현실을 제쳐두고서라도, 정부나 역사학계를 대신하여,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문제 의식을 직접 느끼고, 스스로 나서 이를 직접 고증하고, 이를 소설의 형식을 빌려 출판하여 현재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베스트셀러임이 다행스러울 정도라고까지 해야 할까.

우리나라 국호 韩에 관한 고종실록의 내용, 韩의 유래가 과연 어디인지에 관한 작가님의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강연은 고대 한국의 뿌리가 어디인지, 또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긴 여운이 흘렀다. 이번 강연은 뭔가 찜찜한(?) 느낌이다. 너무나 가슴 아파 의식적으로 모른 체 하고자 했던 우리의 슬픈 역사를 되새겨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슬픈 역사는 현재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끊어낸다는 단호한 각오를 해야만 했다.

작가님이 던져주신 문제 의식을 잊지 않고 간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뿌리가 어디인지에 대해 항상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다. 왜 일본과 중국은 고대 역사에 대해 정·관계, 역사학계를 불문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지 고민할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불행한 근대사를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는지 고민할 것이다.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내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새빛 러브레터는 새빛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편집부에서는 24시간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손에 있을 땐 나에게만 의미가 되어준 글이지만, 이곳에 글을 보내주시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원고마감

어느 때고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원고종류

1. 살아가는 이야기
1000자 정도(일기, 수필, 편지 등/필자 사진, 프로필)
2. 추억의 사진
사진과 간단한 사진이야기(사진 보낸 이의 프로필)
3. 향기나는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며 겪었던 훈훈한 인정,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글이면 좋습니다.
4. 짧은 글 긴 감동
짧지만 감동을 주는 체험담, 생활 속에서 느꼈던 작은 감동을 글로 써 보내면 됩니다.
5. 5매 수필, 손바닥 에세이도 좋습니다.
6. 기타 알리고 싶은 소식 및 광고, 혼자만 감상하기 아까운 시, 수필 등의 작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새빛 러브레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성미경 변호사(mksung@sebitlaw.com)
유명산 팀장(msryu@sebitlaw.com)

12월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안내

여 | 섯 | 번 | 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새빛은 12월 14일 오전 7시 30분 '문묘18현', '국가란 무엇인가'의 저자 신봉승 선생님을 모시고 여섯 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은 고객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오니, 포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포럼 일시 | 2011년 12월 14일(수) 오전 7시 30분

강사 | 신봉승 선생님
(문묘18현,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주제 | 15세기 조선의 르네상스
장소 | 포스코P&S 타워 3층 이벤트홀

제1회 2월: 고영 (SCC대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사) '나비의 꿈' 저자)
제2회 4월: 김승남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회장 '좋은 성공' 저자)
제3회 6월: 신봉승 ('문묘 18현',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제4회 8월: 유영만 (지식생태학자, 한양대학교 교수, '곡선이 이긴다' 저자)
제5회 10월: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저자)



제1회 나의 꿈 M/y/D/r/e/a/m

제1회 새빛 백일장

새빛의 구성원들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조직으로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조인으로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멘토링을 제공하여 남한의 사회경제체제에 을바르게 적응하고 그들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 선발을 위한 1단계 의미를 가지는 "새빛 백일장"을 2011년도에 최초로 개최합니다. 밝고 맑은 꿈을 꾸고, 열정과 목마름을 가진 북한이탈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기간

2011. 10. 10.mon
~ 11. 15.tue

응모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E타워 18층 법무법인 새빛 (우편번호: 135-923)
- 이메일 접수 : essay@sebitlaw.com
※ 응모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이 표결일 경우 당선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심화면접

2011. 11. 16. ~ 2011. 11. 30. 법무법인 새빛 대회의실

결과발표

2011. 12. 12. (월) 법무법인 새빛 홈페이지 www.sebitlaw.com 및 여성학교 게시판에 공지(당선자에게만 개별 통지)

시상식

2011. 12. 14. (수) 오전 7시 30분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포스코P&SE타워 3층 이벤트홀)

시상내용

- 대상 1명 : 상파 및 정학금 100만원
 - 금상 2명 : 상장 및 정학금 각 50만원
 - 은상 3명 : 상장 및 정학금 각 30만원
 - 동상 5명 : 상장 및 문화상품권
- ※ 수상자에 대한 특전
수상자들은 소정의 교육 및 선발과정을 거쳐 통일시대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비 전액 지원, 취업알선, 당선자가 원할 경우 법무법인 새빛 우선 취업기회 제공

시행방법

- 1차 : 에세이 공모 (주제 "나의 꿈")
- 2차 : 심화면접

주최 및 주관 : 법무법인 새빛 | 문의처 : 법무법인 새빛 경영지원본부 Tel : 02-560-5123

후원 : (재) 조은문화재단 Jeon Cultural Foundation | (주) 한글과컴퓨터 hancor | (주) 서희건설

새빛의 법률서비스는 고객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빛의 전문가는 유능하고 바릅니다.

새빛의 직원은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새빛인은 혁신의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새빛이 보내는 러브레터 제 2호

www.sebitlaw.com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 타워 18층
TEL 02 3448 0030 FAX 02 3445 5533

논현 분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
TEL 02 565 7188 FAX 02 542 7186

포항 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6-5 3층
TEL 054 242 3700 FAX 054 242 3702